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1
----------	-----

2023. 4. 25.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4. 6.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수정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

제5조4항(관리·운영의위탁)에 열거된 위탁시설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나. 종전의 구 전체 위탁시설로 열거한 시설 목록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함 (안 제5조제4항)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양성평등기본법」
-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3. 3. ~ 2023. 3.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조례안은 조직개편(23.01.01자)에 따라 (종전)복지정책과의 일부 업무분장 사항을 분리하여 (신설된) 사회보장과에 배정·집행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 복지정책과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총괄적으로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심의·자문 등을 맡던 역할을 조직편성에 맞게 업무를 분담·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참고자료 -2 참조)
- 조례안은 관내 설치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 규정<sup>1)</sup>을 준용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하는 형태로 개정함으로써 법령의 통일성과 법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현 조례는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sup>2)</sup> 대상을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열거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을 준용하여 같은 법에 근거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 관내 설치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시설은 강남청소년수련관과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시설은 강남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음
  - 검토하건데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바, 법제상의 관리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조례 개정 절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절차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금번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4. 25.)

- 질 의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 법에 양성평등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관련인가
- 답 변 :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총 국민기초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총 21개 관련 법령과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에 4개에 규정된 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데 총 31개 법령에 해당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됨.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능력개발원 같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필요하다 판단해서 규정에 명시한 것임
- 질 의 : 조례 제5조제5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재계약·재위탁의 경우 구의회 사전 동의에서 제외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봄.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 답 변 : 통상 민간위탁 계약이 5면, 재위탁·재계약을 가정한 경우 별 문제 없을 때는 10년의 운영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음. 사전 동의에 따른 10년 운영 기간이 관점에 따라 긴 기간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운용 기관이나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는 통용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됨. 사전 동의에 따른 위탁·계약 업체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용하여 재위탁·재계약 할 경우에 다시 동의를 거치는 것은 반복적 절차가 될 우려가 있으며 과장이 클 것이 예상되어 지금 시점의 개정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림. 민간위탁 조례에도 같은 조항이 있으므로, 기획예산과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계속 검토하겠음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164호

발의일자 : 2023. 4. 2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 1. 수정이유

- 용어 통일이 미비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수정함
-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을 나열 방식으로 규정하여 반복적인 개정이 우려되어 나열이 아닌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규정을 수정함

### 2. 수정내용

- 대표협의체라는 용어를 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5항)
-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을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수정함(안제6조2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을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조정”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의무팀장”을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으로 한다.

안 제14조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에 응한다.

1.·2. (생략)

<신설>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

1.·2. (현행과 같음)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

<삭 제>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  
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②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  
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  
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  
책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  
책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 ④ (생략)

----- 복지자원팀장 -----  
-----  
--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  
장, 감염병예방팀장-----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  
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사회보장, 보건의료 분  
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은 -----  
-.

⑤ 동 보장협약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삭 제>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약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약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약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약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14조 ~ 제18조 (생략)

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련된 사항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으로 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 협력

제6조제2항 중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을 “복지자원팀장”으로, “보건지도팀장”을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삭 제>

<삭 제>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  
-----  
-----  
-----  
-----  
-----  
-----.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② (생략)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정책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생략)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복지자원팀장-----

----- 장애인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감염병예방팀장-----.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동 보장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동 보장협약체의 회의에 관  
하여는 제4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8조(동 보장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  
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  
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  
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대표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에  
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대표협의회 위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 제18조 (생략)

제15조 ~ 제19조 (현행 제14조부  
터 제18조까지와 같음)